

세균수막염의 경험항생치료

표 16-1 세균수막염의 경험항생제치료

선행조건	경험항생제 선택
신생아(0~4주)	세프트락심 + 암피실린
영아(4~12주)	3세대세팔로스포린 + 암피실린
소아와 젊은 성인	3세대세팔로스포린 + 반코마이신 (= 암피실린)
50세 이상의 성인	3세대세팔로스포린 + 반코마이신 + 암피실린
기저두개골절	3세대세팔로스포린 + 반코마이신
면역손상 환자	세프트리지덤(또는 세페픽) + 반코마이신 + 암피실린
병원내감염	세프트리지덤 (또는 세페픽) + 반코마이신

긴장성 두통의 종류

표 17-1 긴장형두통의 분류

저빈도삼화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된 저빈도삼화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저빈도삼화긴장형두통

고빈도삼화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된 고빈도삼화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고빈도삼화긴장형두통

만성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된 만성긴장형두통
- 머리주위압통과 관련되지 않은 만성긴장형두통

추정긴장형두통

- 추정저빈도삼화긴장형두통
- 추정고빈도삼화긴장형두통
- 추정만성긴장형두통

30 10-12 긴장형두통의 진단기준

긴장형두통은 두통 발생빈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저빈도삼화: 한 달에 1일 미만의 빈도로 적어도 10회 이상 발생

고빈도삼화: 3개월 이상, 한 달에 1일 이상 15일 미만의 빈도(1년에 12일 이상 180일 미만)로 적어도 10회 이상 발생

만상: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한 달에 15일 이상(1년에 180일 이상) 발생

두통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 A. 기준 B~D를 만족하는 두통이 적어도 10회 이상 발생
- B. 두통은 30분에서 7일간 지속(저빈도 및 고빈도삼화긴장형두통의 경우)되거나 / 수시간 지속되거나 계속됨(만성긴장형두통의 경우)
- C. 두통은 다음 양상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함
 - 양측성
 - 압박감/조이는 느낌(비박동성)
 - 경도 또는 중등도의 강도
 - 걸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되지 않음
- D.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함
 - 구역이나 구토가 없음*
 -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 중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음*
- E. 다른 질환에 기인하지 않음

표 10-5 조짐편두통 진단기준

- A. 기준 B~D를 만족하는 최소한 2회의 발작
- B. 운동악화를 제외하고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를 나타내는 조짐
 - 양성증상(섬광이나 점, 선)이나 음성증상(시력소실)을 포함하는 완전 가역성 시각증상
 - 양성증상(따끔거림)이나 음성증상(무감각)을 포함하는 완전 가역성 감각증상
 - 완전 가역성 언어장애
- C. 다음 중 최소한 두 가지 항목
 - 같은쪽 시각증상 그리고/또는 한쪽 감각증상
 - 최소한 한 가지 조짐증상이 5분 이상 서서히 발생, 그리고/또는 다른 조짐증상이 연속해서 5분 이상 발생
 - 각 조짐증상은 5분 이상 60분 이하의 지속시간을 가짐
- D. 10.4 무조짐편두통의 B~D항목을 만족하는 두통이 조짐 동안 또는 조짐 후 60분 이내에 나타남
- E. 다른 질환에 기인하지 않음

한국의 뇌사 판정기준

한국의 뇌사판정기준

1. 6세 이상인 자: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선행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다.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환기기로 호흡이 유지된다. (3)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수면제·진정제·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뇌병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가 섭씨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판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졸기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padding-right: 20px;">(가) 동공빛반사(light reflex)</td> </tr> <tr> <td>(나) 각막반사(corneal reflex)</td> </tr> <tr> <td>(다) 안구머리반사(oculocephalic reflex)</td> </tr> <tr> <td>(라)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td> </tr> <tr> <td>(마) 섬모척추반사(oculospinal reflex)</td> </tr> <tr> <td>(바) 구역반사(gag reflex)</td> </tr> <tr> <td>(사) 기침반사(cough reflex)</td> </tr> </table> 	(가) 동공빛반사(light reflex)	(나) 각막반사(corneal reflex)	(다) 안구머리반사(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	(마) 섬모척추반사(ocul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가) 동공빛반사(light reflex)								
(나) 각막반사(corneal reflex)								
(다) 안구머리반사(oculocephalic reflex)								
(라) 전정안구반사(vestibulo-ocular reflex)								
(마) 섬모척추반사(oculospinal reflex)								
(바) 구역반사(gag reflex)								
(사) 기침반사(cough reflex)								

- (5) 자발운동, 대뇌제거경축, 피질제거경축 및 경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무호흡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 (7) 재확인: (1)에서 (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 (8) 뇌파검사: (7)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하여 평탄노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2. 6세 미만인 소아: 6세 이상인 자의 뇌사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과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6세 이상인 자 뇌사판정기준의 항목 (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고, 항목 (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 전 후에 각각 한다.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6세 이상인 자의 뇌사판정기준의 항목 (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한다.